

# 고종비 명성왕후/황후 장례절차의 정체성\*

이 현 진\*\*

1. 머리말
2. 명성왕후/황후의 국장 절차
  - 1) 김홍집 내각 주도의 국장: 왕후 국장
  - 2) 아관파천 후 고종 주도의 국장: 왕후 국장
  - 3) 대한제국의 선포와 국장의 변화: 황후 국장
3. 명성왕후/황후 국장의 변화와 특징
  - 1) 의식 절차
  - 2) 용어
  - 3) 도설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은 대내적으로 황제국을 자처하여 그에 걸맞게 국가 의례가 정비된 고려와 달리, 건국하면서 곧바로 제후국임을 천명하여 모든 제도와 의례 등이 그에 맞춰 정비되었다. 묘호(廟號), 능호(陵號) 등 천자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까지 제후국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고종은 명성왕후의 국장을 치르는 가운데 제후국 조선을 천자국 대한제국으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8년도 21세기 신규장각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IKS-2018-452-24301).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국체를 승격시켰고, 그에 따라 명성‘왕후’는 명성‘황후’로 추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목을 명성왕후/황후라고 표기한 것 역시 이러한 정황을 드러낸 필자의 의도이다. 오랫동안 제후국 왕후로서 진행되어 왔던 국장은 천자국 황후에 맞게 치러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본고는 이렇듯 왕후의 국장에서 황후의 국장으로 바뀌면서 변화해야 하는 의례에 주목했다.

현재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 세자와 세자빈, 세손, 정1품 후궁 등의 예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왕 국장과 세자·세손 예장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고, 건축과 역사 두 분야에서 학제간 융합적 연구 성과도 나왔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성왕후/황후의 국장 전반을 다룬 직접적인 연구도 현재 2편이 확인된다.<sup>2)</sup>

기존 연구 중 하나는 저서이고, 하나는 논문이다. 전자는 국장 전반의 진행 과정을 정치적 사건과 관련지어 다루었으나 의례 자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상당하다. 후자는 명성왕후/황후 국장 자체 및 그 의례를 행하는 장소까지 두루 검토한 연구이지만 이 국장이 정치적 사건과 매우 유관하게 진행됨에도 그러한 점에 관심이 크게 두어져 있지 않다. 아울러 후자의 연구에서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황후로 추존된 뒤 비로소 국장이 치러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럴 경우 마치 그 이전부터 치렀던 국장은 무효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기존 연구를 통해 명성왕후/황후 국장의 대체적인 파악은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전자는 의례를, 후자는 『경효전일기(景孝殿日記)』를 주요 자료로 삼았기에 국장 전 과정을 천착하는 데 한계가 없지 않다. 국모의 시해라는 유례가 없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조선 사회 전체에 끼친 파장이 엄청났으며, 이는 국장에서도 수많은 변례(變禮)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황후의 국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대외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진 명성왕후/황후의 국장은

1) 조선 왕실의 상장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현진, 2017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2면 및 338-339면 참조. 여기에 이육, 2017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喪葬禮: 애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을 추가한다.

2) 한영우, 2001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 제1부: 이육, 2018 『대한제국의 성립과 명성황후(明成皇后) 국장(國葬)의 변화』 『종교와 문화』 34.

그 때문에 전 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의궤, 『경효전일기』만이 아니라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의궤, 등록 등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명성'왕후'로 치른 국장, 명성'황후'로 치른 국장 절차를 시간적 추이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의식 절차, 용어, 도설(圖說)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짚어보고자 한다. 조선의 왕후 국장과 왕의 국장을 엮두에 두고 서술하는 것은 물론이다.

명성왕후의 시해가 발생한 뒤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행보와 몰락,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등 국장을 마칠 때까지 중간중간 정치적으로 매우 굵직한 사건의 발생은 명성왕후/황후의 국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 때문에 명성황후의 국장 절차를 통해 당대 정치사도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 명성왕후/황후의 국장 절차<sup>3)</sup>

### 1) 김홍집 내각 주도의 국장: 왕후 국장

1895년(고종 21)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묘시(卯時), 왕후가 경복궁 안 건청궁(乾淸宮) 곤녕합(坤寧閣)에서 붕서(崩逝)했다.<sup>4)</sup> 『고종실록』에는 훈련대 병사들이 궁문으로 난입하고 일본 병사도 따라 들어와 창졸간에 변이 일어났으며, 피시(被弑)된 사실을 추후에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즉시 반포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5)</sup> 『승정원일기』에는 이날 인정(寅正)이 지난 뒤에 일본인과 2훈련대가 곤녕합에 돌입하여 변란이 창졸간에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6)</sup>

3) 2장에서는 『고종실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다른 자료는 참고하는 방식이었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종실록』 각주는 생략하고자 한다.

4) 『明成皇后國恤謄錄』(藏 K2-2933). 이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는 모두 '藏'자를 붙여 표기했다.

5)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8월 戊子(20).

6)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8월 20일(戊子). 관찬 자료에는 주로 일본 군대가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 수비대를 주요 무력으로 한 일단의 일본인들, 일본군 장교, 영사경찰, 신문기자, 사복차림의 일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담했다

일반적으로 국왕이나 왕후가 죽음에 임박하면 종묘, 사직, 산천 등에 기도하라는 명을 내린다.<sup>7)</sup> 그런데 명성왕후는 이처럼 시해를 당한 채 죽음을 맞이하여 일반적인 왕후의 죽음과 달랐다. 왕후가 시해되었음에도 『고종실록』의 기록처럼 그 죽음을 바로 알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조선시대 흥례 규정을 기록한 국가전례서대로 상장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날, 고종은 모든 정령은 모두 먼저 내각(內閣) 대신들부터 의논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렸다.<sup>8)</sup> 명성왕후 시해 당시의 내각은 김홍집 주도의 내각이었다. 김홍집 내각은 본격적으로 상장을 치르기는커녕, 이틀 뒤인 8월 22일(양력 10월 10일)에 고종의 명의로 왕후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는다는 조칙을 발표했다.<sup>9)</sup>

폐서인으로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왕태자가 고종의 칙지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왕태자의 심정을 고려하여 이날 곧바로 폐서인 민씨에게 빈호(嬪號)를 특별히 하사했다.<sup>10)</sup> 왕후로 복위되지 않고 빈호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를 위한 국가적 상장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두어 달쯤 지난 10월 10일(양력 11월 26일), 고종은 왕후 민씨의 위호(位號)를 회복하고 8월 22일 조칙을 격소하라는 조령을 내렸다.<sup>11)</sup> 10월 15일(양력 12월 1일), 마침내 개국(開國) 504년 8월 20일 묘시에 왕후가 곤녕합에서 승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반포했다.<sup>12)</sup> 곧바로 이날 미시(未時)에 복(復) 절차를 거행했다.<sup>13)</sup> 원래 죽은 직후 「복」 절차를 거행하지만 명성왕후는 승하 사실을 공식

고 한다(이민원, 2002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65면).

7) 예를 들면, 영조의 繼妃 貞純王后가 1805년(순조 5) 1월 12일 승하하기 직전에 순조가 廟·社·宮과 산천에 기도하라고 명한 것과 같다[『純祖實錄』 권7, 순조 5년 1월 丁酉(12)].

8)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8월 戊子(20).

9)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8월 庚寅(22).

10)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8월 辛卯(23).

11)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10월 丁丑(10).

12)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10월 壬午(15).

13)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890) 卷1, 舉行日時 “乙未十月十五日 舉復儀”; 『景孝殿日記』(藏 K2-2418) “十月十五日壬午未時 復”. 이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적으로 공표하면서 행했다. 비록 돌아가신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복」을 행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국가전례서에 규정된 순서대로 국장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밖에 이날 여러 가지 일을 결정지었다. 빈전(殯殿)은 경복궁 태원전(泰元殿)으로, 혼전은 문경전(文慶殿)으로, 백관의 곡반(哭班)하는 곳은 경유문(景維門) 밖으로 정했다. 또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호사(總護使)는 궁내부 대신 이재면(李載冕)이 담당하고, 그 밖에 빈전 제거(提舉), 국장 제거, 산릉 제거 등을 각각 차출했다. 일반적으로 총호사를 비롯한 제거들은 나중에 여러 차례 바뀌는데, 의궤의 '좌목(座目)'이라는 항목에 잘 나타나 있다.<sup>14)</sup> 이어서 종척집사(宗戚執事)의 차하를 명하고, 이재면과 영평군 이경응(李景應)은 내곡반(內哭班)에 입참하라고 명했다.

다음날인 10월 16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는 줄곡을 기한으로 정지하되 묘(廟)·전(殿)·궁(宮)에서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焚香)만하며, 각 능·원·묘에서 기신제(忌辰祭)를 지낼 때에도 분향만 행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7일 미시, 대행왕후의 목욕과 습(襲) 절차를 차례로 거행했다. 이틀 뒤 10월 19일 손시(巽時)에 영상(靈床)을 빈전으로 옮겨 봉안하고, 이어서 소렴(小斂)을 행했다. 이날 미시에 대렴(大斂)을 행하고, 신시(申時)에 재궁(梓宮)을 받들어 내렸다[成殯]. 곧, 소렴과 대렴, 성빈을 하루 만에 마친 것이었다. 이즈음 명정을 마련하여 빈전에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빈전에 처음 세운 명정[初銘旌]에는 '효자원성정화합천대행왕후재궁(孝慈元聖正化合天大行王后梓宮)'이라고 썼다.<sup>15)</sup>

10월 21일 궁내부에서 복제(服制) 의주(儀注)를 정탈했다. 대군주(大君主)인

소장 자료는 모두 '奎'字를 붙여 표기했다.

14)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1, 都廳儀軌 座目;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890) 卷1, 座目;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座目. 문제는 위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이들 의궤의 좌목에 반드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의궤에는 모두 제거가 아닌 提調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궤의 좌목에 등재된 사람들의 出入, 제조·제거라는 관직의 변화 및 그 변화가 반영되는 의궤의 편찬 시점 등 추후의 고찰이 필요하다.

15)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890) 卷1, 儀註 「銘旌」.

고종은 자취장기(齊衰杖舄), 왕태후는 소공(小功) 5개월, 왕태자는 자취장기, 왕태자비는 자취기년(齊衰綦年)이었다. 명성왕후가 고종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으므로 '내상재선(內喪在先)'에 해당하는 국장이므로 고종과 왕태자는 기년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규정 그대로였다.<sup>16)</sup> 당시 왕태후는 현종의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이다.

다음날 10월 22일 손시에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 절차를 행했다. 이날에는 또 시호(諡號)와 전호(殿號), 능호(陵號) 등을 정했다. 시호는 순경(純敬), 혼전의 전호는 덕성(德成), 능호는 숙릉(肅陵)으로 결정되었다.<sup>17)</sup> 이제 돌아가신 왕후를 일컬을 때 묘호나 시호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대행왕후(大行王后)'가 아닌 순경왕후, 덕성전, 숙릉 등으로 칭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행왕후라 불렀으며, 아울러 승하한 왕후에게 올리는 일종의 존호인 휘호(徽號)를 정하지 않았다. 대행왕후라 일컫고, 휘호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10월 27일, 산릉을 처음 간심(看審)하러 나갔고, 그 다음날인 28일에 간심하러 나간 이들이 궁으로 들어왔다. 이때 간심하러 간 곳은 동구릉(東九陵) 국내(局內)와 의릉(懿陵) 국내였다.<sup>18)</sup> 11월 2일, 산릉을 재간심하러 승릉(崇陵) 우강(右岡)과 의릉 우강으로 나갔다.<sup>19)</sup> 다음날[3일] 간심하러 간 이들이 들어오면서 승릉 국내가 '대길지(大吉地)'라고 보고했고, 고종은 수릉(綏陵)과 그리 멀지 않아 그 또한 다행이라고 하며 수망(首望)으로 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삼간심(三看審)한 뒤 봉표(封標)하고, 석의(石儀)는 장대하지 않도록 명릉(明陵)·홍릉(弘陵)의 예(例)에 따르도록 했다.

11월 4일, 산릉은 승릉 우강으로 정하고, 삼간심을 한 후 그대로 봉표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다음날 곧바로 산릉을 삼간심하러 승릉 우강으로 나갔고, 이날

16)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1, 「服制」.

17)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0월 22일(己丑):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10월 己丑(22).

18)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19)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진시(辰時)에 승릉 우강에 봉표했다.<sup>20)</sup> 이때 고종의 제칙에 따라 총리대신 김홍집과 특진관 정범조(鄭範朝)도 함께 갔다.

산릉 자리를 정하자 궁내부에서 11월 7일 '산릉택일별단(山陵擇日別單)'에 대해 상주했다. 별단에 따르면, 발인은 이듬해인 1896년(고종 33) 2월 25일 자시(子時)에 행한다고 되어 있다. 왕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포한 1895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5개월째가 된다. 이를 지킨다면 왕후 국장에서 승하한 지 5개월이 되는 달에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한 국가전례서의 규정에 부합한다.<sup>21)</sup>

11월 7일은 또 고종과 왕태자가 공제(公除)하는 날이었다. 공제 일수는 성복할 때 입는 상복과 같지만 역월제(易月制)를 적용하여, 고종과 왕태자처럼 장기(杖笄)인 경우 성복한 날부터 15일 동안 상복을 입은 뒤 벗었다.<sup>22)</sup> 10월 22일에 성복했으므로 만 15일이 되는 11월 7일이 공제하는 날이었다.<sup>23)</sup>

11월 15일, 내각의 논의를 거쳐서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의정했다.<sup>24)</sup> 그리고 이날 고종은 단발령을 내렸다. 다음날[16일] 고종은 명일(明日)이 원조(元朝)이므로 빈전에서 행하는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에 백관이 입참하라는 칙령을 내렸다.<sup>25)</sup> 1895년 11월 17일은 건양 1년(1896, 고종 33) 1월 1일(양력)이었으므로, 이날부터 『고종실록』에는 양력으로 날짜를 기재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는 그대로 음력으로 기록하여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고종실록』을 따라 건양 1년 1월 1일부터 양력으로 날짜를 쓰되 필요한 경우 음력을 병기하고자 한다.

1896년 1월 9일, 재궁 전체에 가칠(加漆)하고, 다음날 재궁에 상자(上字)를 쓸

20)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11월辛丑(5).

21)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1, 「治葬」.

22)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1, 「戒令」.

23)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0월 17일(甲申).

24) 『승정원일기』에는 11월 15일에 연호를 건양으로 의정한 기사가 실려 있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 사이트를 참조했다(<http://sjw.history.go.kr>).

25)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1월 16일(壬子).

때 총리대신 이하에게 입시하라고 명했다. 10일, 고종은 빈전에 나아가 왕태자에게 재궁에 상자를 직접 쓰라고 명한 뒤 별다례(別茶禮)를 행했다. 이틀 뒤 12일, 빈전에 나아가 재궁을 싸서 묶는 절차[結裹]를 친히 살핀 후 별전(別奠)과 주다례를 행했다. 1월 23일, 경무사 허진(許璣)을 인산할 때의 배왕대장(陪往大將)으로 임명했다.

2월 4일, 『상례보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맡은 여러 일을 관제가 개정된 지금은 총리대신과 궁내 대신이 각각 맡도록 제칙을 내렸다. 빈전에 증시(贈諡)할 때 영의정이 맡은 일은 총리대신이 집행하고, 하현궁(下玄宮)할 때 영의정이 맡은 진옥백(進玉帛), 전애책(奠哀冊), 현궁감봉(玄宮監封) 및 발인과 하현궁할 때 좌의정이 맡은 술여재궁관(帥昇梓宮官)은 모두 총리대신이 담당하며, 우의정이 맡은 계찬궁(啓欝宮)할 때의 식재궁관(拭梓宮官)과 하현궁 후의 복토관(覆土官)은 궁내 대신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었다. 개편된 관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개편된 관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2) 아관파천 후 고종 주도의 국장: 왕후 국장

1895년 10월 15일(음력) 명성왕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반포한 뒤 위에서 보듯 국장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고종은 1896년 2월 11일(양력)에 왕태자와 함께 대정동(大貞洞)의 아국(俄國) 공사관으로 주필(駐蹕)을 이어했고, 왕태후와 왕태자비는 경운궁으로 이어했다.<sup>26)</sup> 소위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고종의 위기탈출이자 일본의 왕후 시해와 위압에 맞선 러시아의 대응이었다.<sup>27)</sup>

이 사건은 결국 명성왕후의 죽음을 공포한 뒤부터 진행된 국장 절차가 고종의 의도와 무관한 칙령이 내려졌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관파천 이후 진행되는 국장 절차와 대비해서 본다면 그러한 점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향후 고종의 행보를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26)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2월 11일(陽曆).

27) 아관파천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민원, 2002 앞의 책, 3장 1절 2)항 참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간 뒤 우선 인사부터 단행했다. 내각 총리대신인 김홍집부터 그 내각을 구성했던 사람들의 본관(本官)을 면직한 것이었다. 『고종실록』에는 이날 김홍집과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정병하(鄭秉夏)가 민중들에게 살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살해된 뒤 고종은 왕후의 붕서 반포가 늦어진 것을 역적의 교무(矯誣) 때문이라고 하면서 을미년 8월 22일의 조칙과 10월 10일의 조칙을 모두 격소하려는 조령을 내렸다.

2월 13일, 아관파천과 김홍집 내각이 무너졌음을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려서 알렸다. 이 윤음에서 고종은 ‘불일간(不日間)’에 장차 환어(還御)할 것이라고 ‘명고(明告)’한다고 했다. 3일 뒤 2월 16일, 고종은 환어는 경운궁과 경복궁의 수리가 끝나는 대로 거처를 확정하겠다는 조령을 다시 내렸다. 다른 나라 공사관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당시 정세가 위태롭고 정국이 안정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국장과 관련하여 고종은 우선 국장 담당자들을 다시 임명했다. 산릉제거와 빈전제거의 임명은 물론, 총호사 이재면을 해임시키고 정1품 조병세(趙秉世)로 교체했다. 혼전 향관(享官)을 차하하고, 인산할 때의 배왕대장 또한 경무사 김재풍(金在豐)으로 바꾸었다. 이는 고종 주도의 국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고종은 3월 11일 세 도감의 공역을 우선 정지하고 제반 일자는 하교를 기다려 추택하라는 조칙을 내렸다.<sup>28)</sup> 이로써 아관파천 후 명성왕후의 국장은 일단 중지되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빈전 제거의 임명이라든가 조병세에서 궁내부 특진관 김병시(金炳始)로 총호사를 교체하는 일은 지속되었다. 김병시는 5월 1일 상소를 올려, 인봉(因封, 因山) 날짜를 지난 번에 물린 것도 의외의 일인데 아직도 길한 날을 추택(追擇)하라는 성명(成命)을 듣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그 까닭을 듣고 싶어했다. 하지만 고종은 그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5월 14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협상이 체결되었다[日露協商]. 협정한 각서 중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양 대표는 조선 국왕에게 환궁을 충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고종은 환궁하지 않았다. 5월 18일 총호사 김병시를 해임하고 조병

28)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월 28일(癸亥):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3월 11일(陽曆).

세로 대체했다.

7월 24일에는 각 묘(廟)·전(殿)·궁(宮)·능원(陵園)의 제향은 일체 옛 법식 [舊式]대로 준행하며, 대·중·소사의 월일은 모두 구력(舊歷)을 사용하라고 하여, 국가 제사는 모두 음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음력의 사용은 이후 각 전궁의 탄신 월일에도 적용되었다. 관제의 개편도 익숙하지 않은데 양력의 사용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구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이해된다.

8월 10일 열성조가 임어했던 경운궁의 수리가 아직도 미흡하여 궁내부와 탁지부에게 수리의 관리를 맡기되 간단하게 하도록 조령을 내렸다. 경운궁의 수리는 고종이 환궁을 하더라도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하려는 의도로 예측된다. 이는 8월 23일 경복궁에 있는 빈전을 경운궁 별전(別殿)으로 이안(移安)하라는 조령에서 명확해졌다.<sup>29)</sup> 고종이 아궁으로 이차(移次)한 지 꽤 되었으나 빈전을 요망(遙望)하기만 할 뿐이었고, 빈전에서 행해야 하는 의례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한 후 본인 주도의 국장을 진행시키고자 하지만 빈전이 경복궁에 있었으므로 여의치 않았다. 그렇다고 빈전에서 행해야 하는 의례를 거행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에 대정동과 가까우면서도 왕태후와 왕태자비가 이어해 있는 경운궁으로 옮기는 구상을 했고, 이에 빈전으로 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수리를 명한 것이었다.

8월 23일에는 또 인산할 때의 배왕대장 김재풍을 해임하고 경무사 이종건(李鍾健)으로 대신하게 했다. 이틀 뒤 8월 25일, 빈전의 이안 이유가 동궁의 성효(誠孝)임을 강조하며 음력 7월 27일(양력 9월 4일)에 동궁이 별전(別奠)을 올릴 것이므로 백관의 입참을 명했다. 8월 28일 『보편』의 횡간도(橫看圖)를 따라 복제를 이정하여 마련하도록 조령을 내렸고, 다음날[29일] 고종의 시사복(視事服)

29)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8월 23일(陽曆). 이때 빈전과 함께 진전도 경운궁으로 移奉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국왕이 다른 궁궐로 이어를 하면 혼전의 신주나 진전의 어진도 함께 가기 마련인데(이현진·손신영, 2017 『조선후기 궁궐의 殿閣 月臺와 의례: <동궐도>와 <서궐도안>을 대상으로, 『東洋古典研究』 67, 411-412면), 이때에는 발인하기 전이라 혼전이 아닌 빈전의 이안 및 진전의 이봉을 명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국장과 관련된 '빈전의 이안'에만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과 연거복(燕居服), 왕태자와 왕태자비의 진현복(進見服)을 기존의 복제 의주에 개부표해서 올려졌다.

9월 4일, 마침내 경복궁에 있던 빈전을 경운궁으로 이봉했다.<sup>30)</sup> 앞서 빈전 처소를 경운궁 별전이라고 했는데, 그 별전은 바로 새로 지은 경운궁 경소전(景昭殿)이었다.<sup>31)</sup> 고종은 경운궁 대문 밖으로 나아가 신백(神帛)을 맞이하면서 곡하고[迎哭], 왕태자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 지영(祇迎)했다. 재궁을 빈전에 봉안하여 성빈한 뒤 고종과 왕태자는 각각 별전(別奠)을 올렸다.<sup>32)</sup>

경운궁으로 빈전을 옮겼으니 본격적인 국장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9월 7일, 장례원 경 민종묵(閔種默)이 인봉과 연제(練祭)는 초기(初忌)인 8월 20일 이전에는 어려울 듯하며, 이러한 변례를 위해 『가례증해(家禮增解)』, 『예기』의 『소기(小記)』·『증자문(曾子問)』, 『예의유집(禮疑類輯)』을 인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소를 올렸다.

9월 23일, 민종묵의 상소 내용을 두고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참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나 이는 모두 사상례(士喪禮)일 뿐 왕조의 전례(典禮)가 아니기에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 대신 대행 왕후의 초기신(初忌辰)에 별전을 친행하되 의주는 제례(祭禮)대로 마련하는 것으로 끝났다. 조선이 건국된 이래 이러한 사태는 처음이므로 별전을 올리는 의주를 마련하는 것조차 일일이 고종의 재가가 필요할 정도였다. 인산과 그 이후의 국장 절차는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았다.

9월 26일(음력 8월 20일) 빈전에서 고종과 왕태자는 명성왕후의 초기신 별전을 친행했다.<sup>33)</sup> 이때 궁내부 각사는 숙목문(肅穆門) 안에서, 백관들은 숙목문 밖

30)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9월 4일(陽曆). 빈전을 경운궁 별전으로 이봉할 때의 반차도는 『殯殿移奉慶運宮時班次圖明成皇后發朝班次圖』(藏 K3-550) 참조.

31) 『景孝殿日記』(藏 K2-2418) 丙申七月二十七日庚申 陽九月四日. 여기에는 경복궁 빈전에서 경운궁 빈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빈전이 경소전이라는 사실은 이욱, 2018 앞의 논문, 47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때 빈전으로 삼은 경소전은 새로 지은 전각이다[『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10월 19일(陽曆)].

32)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7월 27일(庚申);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9월 4일(陽曆).

33) 『高宗實錄』 卷34, 고종 33년 9월 26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8월 20일(壬午). 초기신 별전의 친행 절차는 『승정원일기』가 참조된다.

에서 곡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문·음·무관으로 3품 이상을 지낸 사람도 곡반에 입참했다. 고종과 왕태자가 아국 공사관에 있으면서 결국 명성왕후의 초기신을 맞이한 것이었다.

다음날[27일] 고종은 새 능이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 동안 상지관(相地官)을 몇 번 나누어 보내어 다시 간심하여 길지를 택하게 했다고 했다. 고종은 인봉이 지체되는 이유가 형편[事勢]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 정한 산릉에 대해 중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sup>34)</sup> 김홍집 내각 시절 승릉으로 정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9월 28일, 경운궁 역소(役所)의 공역이 준공되었다. 한 달여 지난 10월 31일, 고종은 '전각이 조성되면'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경운궁으로 이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당우(堂宇)의 수리 공역을 마치도록 조칙을 내렸다. 그러자 신하들은 고종의 이어와 명성왕후의 인봉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11월 12일, 일주일 뒤에 있을 추상지기(追喪之期, 혹은 追服之期)의 복제에 대해 논의했다. 왕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반포한 음력 10월 15일이 양력으로 11월 19일이었기 때문이다. 곧 다가올 그 날에 경례(經禮)로 할 것인지, 변통으로 할 것인지는 제마(除麻)의 여부에 달렸다는 장례원 경 김규홍(金奎弘)이 10월 22일에 올렸던 상소에 대한 논의였다.<sup>35)</sup> 인산조차 하지 않았기에 여러 변례가 계속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이 확정적이지 않아 봉조하 송근수(宋近洙)의 견해를 따라 신서(臣庶)의 복제는 우제와 졸곡제(卒哭祭)를 기다려 벗도록 제칙을 내렸다. 11월 19일(음력 10월 15일), 고종과 왕태자는 빈전에 나아가 별전을 거행했다.

12월 8일, 고종은 조칙을 내려 국장의 발생으로 정지했던 대소(大小) 향사를 이제 주세(周歲)가 되었으므로 장례원에서 거행하도록 명했다. 다음날 9일, 산릉 1차 간심을 위해 27곳을 돌아보고 온 대신 이하 사람들을 소견한 결과 7군데가 아주 좋았다고 했다.<sup>36)</sup> 7곳을 중심으로 재간심을 했으나 모두 산운(山運)이 맞

34)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10월 31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9월 25일(丁巳).

35)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10월 22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9월 16일(戊申).

36) \* 27곳 :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참조.

지 않아, 다시 초간심, 재간심을 거쳐서 연희궁(延禧宮), 청량리(淸涼里), 개운사(開運寺) 중 최종 청량리로 정했다.<sup>37)</sup>

청량리로 산릉 자리를 정한 이날은 이듬해(1897, 고종 34) 1월 3일이었다. 이곳으로 정한 것은 동릉(東陵, 동구릉)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행행하기에 편근하다는 이유였다.<sup>38)</sup> 동릉과의 거리는 20리에 불과했다.

1897년(고종 34) 1월 3일, 이날은 산릉 자리를 최종 정하기도 했지만 대행왕후의 시호와 능호, 전호를 다시 의정하라는 조칙이 있었다. 의정부 찬정 김영수(金永壽)가 상소하여 작년 겨울에 이를 의정할 때 역신 김홍집이 그 일을 주관했으므로 다시 정할 것을 요청했고 고종도 그 안전에 공감한 것이었다. 1월 6일, 시호는 문성(文成), 능호는 홍릉(洪陵), 전호는 경효(景孝)로 정했다. 특이한 것은 시호와 능호, 전호를 다시 정했음에도 그를 가리킬 때 '대행왕후'라 일컬었다는 것과 이때에도 휘호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월 9일, 삼간심하러 청량리로 나갔고, 미시에 봉표했다.<sup>39)</sup> 마침내 고종은 세도감의 공역을 금일[9일]부터 시작하라는 조칙을 내렸고, 아울러 혼전의 처소를 경소전으로 마련하라고 명했다. 이는 곧 빈전이었던 곳을 그대로 혼전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었다. 이 당시 경운궁의 빈전과 혼전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학 전공자와 별고를 준비하고 있다.

산릉 자리를 정하자 총호사 조병세가 1월 10일 빈청에서 회의하여 정한 '산릉 각항길일(山陵各項吉日)'의 별단에 대해 상주했다. 별단에 따르면, 발인은 4월 4일 축시(丑時)에 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릉에 봉표한 곳을 이번에 옮겨 정하면서 예산까지 문제가 되었다. 석의와 재목, 기와 등은 작년 겨울에 봉표해서 공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승릉 우강의 것을 철회하고 옮겨다 쓰면 되었으나 봉표의 이정(移定)은 물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 마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홍궁(洪宮) 터를 사는 데 드는 비용만 2,196원이었다. 선방(禪房)

\* 7곳 :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1월 5일(丙申) : 『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12월 9일(陽曆) 참조.

37)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38)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2월 1일(辛酉) : 『高宗實錄』 권35, 고종 34년 1월 3일(陽曆).

39)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과 민가의 철취 및 사총(私塚)의 굴이(掘移)가 있어야 시역이 가능했다. 이는 곧, 산릉 구역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며, 아울러 발인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었다.

1월 30일, 경무사 김재풍을 인산할 때 배왕대장으로 삼았다. 2월 20일, 드디어 경운궁으로 환어했다. 고종은 아관으로의 이차(移次)는 부득이한 것이었는데, 모든 대신들이 누누이 환어를 역설했기에 지금 환어하게 되었다고 하교에서 밝혔다.<sup>40)</sup> 아관파천 후 1년여 만에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왔으나 국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누적되어 있었다. 고종은 3월 2일 신하들을 소견하여 대행왕후의 시호부터 다시 의논하도록 했다. 열성조의 시자(諡字)와 10여 차례 서로 같으며, 특히 대행왕후의 ‘문성’은 정종(正宗)<sup>41)</sup>의 시자와 서로 같을 뿐 아니라 대수까지 가까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sup>42)</sup> 정조의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였다. 대행왕후 문성의 뜻과 정조의 시호 8글자 중 문성 두 글자의 뜻이 같았던 것이다. 이에 고종은 시호 망단자에서 부망(副望)이었던 ‘명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마침내 이것으로 정했다.<sup>43)</sup>

사실 시호만 바꾸더라도 시책(諡冊), 시보(諡寶), 행장, 명정 등 고쳐서 마련해야 할 글과 의물이 적지 않다. 그런데 명성왕후는 이렇듯 여러 번 시호를 바꾼 것이었다. ‘명성’으로 시호를 고치면서 3월 4일에 시보, 개명정(改銘旌), 우주(虞主) 등에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시보는 ‘명성왕후시보(明成王后之寶)’, 개명정은 ‘효자원성정화합천명성왕후재궁(孝慈元聖正化合天明成王后梓宮)’, 우주는 ‘효자원성정화합천명성왕후(孝慈元聖正化合天明成王后)’ 등으로 쓰는 방식을 정했다.<sup>44)</sup>

40)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월 19일(己酉).

41) 正宗을 正祖로 존호를 올린 때는 1899년(고종 36) 11월 5일(양력 12월 7일)이다(이현진, 2012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 七廟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改題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40, 519-520면).

42)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월 29일(己未); 『高宗實錄』 권35, 고종 34년 3월 2일(陽曆).

43)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월 29일(己未); 『高宗實錄』 권35, 고종 34년 3월 2일(陽曆).

44)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890) 卷1, 掌禮院來照 『丁酉二月初二日』, 음력 2월 2

그러던 중 3월 16일, 총호사 조병세가 산릉 구역이 이전에 비해 호대(浩大)하여 기일에 맞춰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아뢰었다. 능 자리를 다시 정한 것에 더하여 구역도 방대하므로 발인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정한 산릉 자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3월 29일, 능 구역에서 개기(開基)할 때 유해(遺骸)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3월 30일, 곧바로 신하들을 소견하여 문제가 생긴 산릉 자리에 대해 논의했다. 신하들은 다시 길지를 정해야 한다고 아뢰지만 고종은 오히려 대범하게 여기며 추이(推移)할 방도를 찾으라고 했다. 고종은 인산이 이미 해를 넘겼으므로[經年] 다른 곳으로 길지를 찾기 보다는 여기에 다시 봉표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그러면서 이미 파낸 곳의 전후좌우를 두루 파내어 상세히 살피도록 했다. 4월 1일, 산릉에 나아가 다시 봉표하고 오라는 조칙 및 능침의 석의는 장릉(長陵) 천봉과 현릉원 천원(遷園)의 규례에 따라 배설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4월 3일, 산릉에 다시 봉표했다. 그러자 4월 14일 고종은 '인산각항길일(因山各項吉日)'을 다시 회의하여 택일(擇日)하도록 명했다. 신하들이 올린 별단에 따르면, 발인은 5월 6일 축시에 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국장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장 지연을 우려할 만한 또 다른 크나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고종의 황제로의 즉위 주청이었다. 『고종실록』에는 5월 1일자 전 승지 이최영(李戢榮) 등이 올린 상소에서부터 확인된다. 5월 20일 고종은 '인산각항길일'을 다시 회의하여 택일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5월 31일, 신하들이 올린 '산릉각항길일'의 별단에 따르면, 발인은 8월 6일 축시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상대로 발인은 또 다시 지연되었다.

8월 14일 건원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고종은 1897년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하도록 했다. 마침내 8월 16일 원구, 사직, 종묘 등에 나아가 건원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이날부터 광무 1년이 시작되었다.

8월 23일, 고종은 '인산각항길일'을 다시 회의하여 택일하도록 했고, 3일 뒤 26일 신하들이 별단을 올렸다. 발인은 9월 8일 축시로 정해졌다. 8월 31일 세 도감의 구역이 거의 끝나간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발인과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9월

일은 양력 3월 4일이다.

16일(음력 8월 20일) 대행왕후의 재기신(再忌辰)을 맞았다. 이날도 고종과 왕태자는 빈전에 나아가 자시에 별전을 올렸다.<sup>45)</sup>

9월 21일, 장례원 경 김규홍이 천지 합제(合祭)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환구(圜丘) 의제(儀制)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개축(改築) 및 제반 의문(儀文)에 대해 소견을 아뢰었다. 그러자 고종은 날을 잡아[卜日] 축단(築壇)하고 제반 의문은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9월 24일 ‘인봉각항일자’를 칙지가 내리기를 기다려서 다시 택하여 들이라는 조령을 내렸다.<sup>46)</sup>

산릉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신하들의 황제 즉위 요청, 원구단의 개축, 인봉 각항 일자의 연기 등 국장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다.

### 3) 대한제국의 선포와 국장의 변화: 황후 국장

고종이 인산 날짜를 미룬 뒤, 원구단 제반 의문, 원구단 축단, 제호(帝號) 칭호의 주청 등이 주된 안건으로 부상했다. 특히 9월 25일을 시작으로 황제로 칭할 것을 주청하는 의론이 본격화되었다. 진신(摺紳) 716인의 연명 상소, 시원임 의정 이하, 관학 유생, 백관, 시민(市民) 등 계속해서 제호의 존칭에 대해 청하자, 고종은 10월 3일 ‘마지못해 면중(勉從)한다.’고 비답했다.

고종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각종 절차를 논의하는 등 고종의 황제 즉위 과정은 급물살을 탔다. 고종은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례(典禮)이므로 고례를 모두 따를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예에서 참작하여 변통해서 그 간편함을 취하도록 유지했다. 황제 즉위 및 황후·황태자의 책봉 길일은 음력 9월 17일로 정했다.

그러한 상황하에 경운궁 즉조당(卽祚堂)의 편액을 태극전(太極殿)으로 새겨 걸도록 하고, 사직단의 신위판(神位版)을 국사(國社)·국직(國稷)에서 태사(太社)·태직(太稷)으로 개제(改題)하며, 빈전에 옥책(玉冊)이 아닌 금책(金冊)을 내리는 등 제후국이 아닌 천자국의 위상에 맞도록 제반 일들을 정비해 나갔다.

10월 11일, 이날에는 천하지호(天下之號)에 대해 논의했다. 신하들 역시 천명

45)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8월 20일(丁丑):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9월 16일(陽曆).

46)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9월 24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8월 28일(乙酉).



이 새로워지고[維新] 온갖 제도가 새로워진 지금 국호를 새로이 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종은 ‘대한(大韓)’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신하들도 고종의 생각에 동참하여 ‘대한’으로 정해졌다. 이에 고종은 원구단 고유제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명했다.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자시, 고종과 왕태자가 환구(圜丘)에서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낸 뒤 고종은 황제로 즉위했다.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는 황태자로 책봉했다.<sup>47)</sup> 이날 또 『승정원일기』에는 신시에 고종과 왕태자가 빈전에 나아가 책보진호(冊寶進號)한 별전을 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8)</sup> 『고종실록』에는 황후 책봉에 관한 고유 별전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9)</sup> 다음날 태극전에 나아가 백관들의 진하를 받고, 조서를 반포하며,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

10월 15일, 고종은 책시(冊諡) 및 ‘인봉각항길일’을 다시 회의하여 택하도록 했다.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국장의 재개부터 서둘렀던 것이다. 경운궁으로 환어, 황제 즉위, 황후·황태자 책봉 등 큰 일을 치렀고, 이제 오랫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황후 국장을 치르는 일이 남은 것이었다. 고종의 명에 신하들이 올린 별단을 보면, 발인은 10월 27일 인시(寅時)였다.

11월 6일, 명성황후라고 책시한 조서를 반포했다.<sup>50)</sup> 3일 뒤, 11월 9일 신시에 고종과 황태자는 빈전에 나아가 별전을 친행했다.<sup>51)</sup> 이 날은 음력 10월 15일로 대행황후의 추복(追服) 두 돌이 되는 날이었다[追服之再朞]. 고종은 황후의 복제에 대해 역대의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바로잡아서 들이도록 했다.<sup>52)</sup> 이에 신하들에게 문의한 결과, 홍무(洪武) 고황후(高皇后)의 상례를 따라 신민의 복제를 이정하여 상제(祥祭)를 지낸 뒤 벗는 것으로 결정했다.

11월 17일, 고종은 황후의 인봉례가 특별하므로 장차 황당(皇堂)에 임해서 곡결(哭訣)하겠다는 조령을 내렸다. 사실 이보다 앞서 이해 4월 8일에 고종은 발

47)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17일(癸卯):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0월 12일(陽曆).

48)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17일(癸卯).

49)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0월 12일(陽曆).

50)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6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12일(戊辰).

51)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15일(辛未):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9일(陽曆).

52)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15일(辛未):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9일(陽曆).

인할 때 인화문(仁化門) 밖에서 곡결하고, 인화문 밖에서 봉사(奉辭)하며, 반우(返虞)할 때에는 성문 밖에서 지영(祇迎)하기로 제칙을 내렸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발인 행렬을 따라 산릉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었다. 이후 신하들은 황당에 친립하겠다고 한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했으나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18일, 천지와 종묘, 영녕전 등에 대행황후의 발인 고유제를 지냈다. 11월 19일 빈전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계빈전(啓殯奠)과 겸행하고, 미시에 찬궁(欝宮)을 열었다[계찬궁]. 다음날 20일, 궁을 나올 때의 문로(門路)는 칙지를 받들어 현광문(顯光門)으로 정했다.<sup>53)</sup> 이날[20일] 빈전에 나아가 사전(辭奠)을 행하고, 이어서 조전(祖奠)을 행했다.

11월 21일(음력 10월 27일), 빈전에 나아가 해사제(解謝祭)를 지내고, 이어서 견전(遣奠)을 행했다. 대행황후의 영가(靈駕)가 출발하여 산릉으로 나아갔다[발인].<sup>54)</sup> 발인 후 고종은 인화문 밖에 나아가 곡결하고, 황태자는 따라 나아가 봉사했다. 곡결을 황당에서 하겠다는 앞서의 결정과 달리 인화문 밖에서 행했는데,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고종과 황태자는 산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經宿].

11월 22일(음력 10월 28일 갑신), 진시에 천전(遷奠)과 하현궁(下玄宮)을 행하고, 이어서 입주전(立主奠)을 행한 뒤 반우했다. 반우하기에 앞서 입주전을 행할 때 우주에 글을 쓰는 절차를 진행했고, 황당에서 우주에 '효자원성정화합천명성황후(孝慈元聖正化合天明成皇后)'라고 썼다.<sup>55)</sup>

이날[11월 22일] 반우하여 신주를 경효전(景孝殿)으로 봉안한 뒤 자시에 초우제(初虞祭)를 친행했다.<sup>56)</sup> 또 경효전으로 나아가 신백을 지송(祇送)했다. 11월 23일(음력 10월 29일 을유) 자시, 경효전에서 재우제(再虞祭)를 직접 지냈다.<sup>57)</sup> 11월 24일(음력 11월 1일 병술) 자시, 경효전에서 삼우제(三虞祭)를 친행했다.<sup>58)</sup>

53)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26일(壬午).

54)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1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27일(癸未).

55)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1, 都廳儀軌 掌禮院來通 『光武元年丁酉九月三十日』.

56)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28일(甲申);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2일(陽曆).

57)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29일(乙酉);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3일(陽曆).

11월 26일(음력 11월 3일 무자) 자시에 경효전에서 사우제(四虞祭)를 친히 지냈다.<sup>59)</sup> 11월 28일(음력 11월 5일 경인) 자시에 경효전에서 오우제(五虞祭)를 친행했다.<sup>60)</sup> 11월 29일 오시(午時)에 산릉에서 안릉전(安陵奠)을 올렸다. 11월 30일(음력 11월 7일 임진) 자시에 경효전에서 육우제(六虞祭)를 친히 지냈다.<sup>61)</sup> 12월 2일(음력 11월 9일 갑오) 자시에 경효전에서 칠우제(七虞祭)를 친행했다.<sup>62)</sup> 12월 4일(음력 11월 11일 병신) 자시에 경효전에서 팔우제(八虞祭)를 직접 지냈다.<sup>63)</sup> 12월 6일(음력 11월 13일 무술) 자시에 경효전에서 구우제(九虞祭)를 친행했다.<sup>64)</sup>

12월 8일(음력 11월 15일 경자) 자시, 경효전에 나아가 줄곡제를 직접 지냈다.<sup>65)</sup> 다음날 12월 9일(음력 11월 16일) 자시에 경효전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친히 지내고, 손시에 태묘에 나아가 명성황후의 부알례(祔謁禮)를 친행한 뒤 친제(親祭)를 지냈다. 영녕전에도 이와 같이 행례했다.<sup>66)</sup>

우제를 구우제까지 지내고, 줄곡 다음 날에 부알례를 거행한 것은 조선시대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의례였다. 이제 남은 의절은 연제, 상제, 담제(禫祭) 그리고 부모(祔廟)이다.

먼저 연제이다. 장례원 경 김영목(金永穆)은 12월 14일 <장불이시조(葬不以時條)>에 나오는 ‘부제(祔祭)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를 지낸다.’는 내용을 근거로<sup>67)</sup>

58)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일(丙戌):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4일(陽曆).

59)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3일(戊子):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6일(陽曆).

60)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5일(庚寅):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28일(陽曆).

61)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7일(壬辰):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1월 30일(陽曆).

62)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9일(甲午):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2월 2일(陽曆).

63)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1일(丙申):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2월 4일(陽曆).

64)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3일(戊戌):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2월 6일(陽曆).

65)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5일(庚子):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2월 8일(陽曆).

음력 11월 15일에 줄곡제를 지내기로 한 날짜의 추측은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5일(庚寅) 참조.

66)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1월 16일(辛丑):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 12월 9일(陽曆).

67) 『讀禮通考』 卷105, 變禮5 「葬不以時」. <장불이시조>가 徐乾學의 『讀禮通考』에 나오는 편명이라는 정보는 이옥, 2018 앞의 논문, 60면 참조. 『독례통고』는 影印古籍資料에서 영인된 四庫全書에 실린 것을 참고했으며, <<https://sou-yun.com/>> 사이트를 참고했다.

‘음력 정유년(1897) 12월 12일’에 연제를 지낼 것을 아뢰었고, 고종이 윤허했다. 1898년(고종 35) 1월 3일 고종은 청목재에서 연제에 쓸 축문에 친압하고, 다음 날 1월 4일(음력 12월 12일) 자시에 경효전에서 친히 연제를 지냈다.<sup>68)</sup>

다음은 상제이다. 장례원 경 김영목은 1월 8일 <장불이시조>에 나오는 ‘연제를 지낸 다음 달에 상제를 지낸다.’는 내용을 근거로<sup>69)</sup> ‘음력 무술년(1898) 정월 21일’에 상제를 지낼 것을 아뢰었고, 고종이 윤허했다. 2월 11일(음력 1월 21일) 자시에 경효전에서 상제를 지냈다.<sup>70)</sup> 2월 16일, 관상소(觀象所)에서 담제 지내는 길일을 ‘음력 3월 22일’로 추택한 것을 보고하자, 고종이 허락했다.<sup>71)</sup> 4월 12일(음력 3월 22일) 자시에 경효전에서 담제를 친행했다.<sup>72)</sup>

마지막으로 부모 절차가 남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성왕후/황후의 국상은 ‘내상재선’에 해당하여 담제를 지낸 뒤에도 혼전에 신주가 그대로 봉안되어 있었다. 왕후/황후의 신주는 배우자인 국왕/황제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부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인 고종이 승하하고 부태묘(祔太廟)할 시점인 1921년 3월 30일 까지 경효전에 신주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1921년(순종 14) 3월 30일, 오후 2시에 고종의 신주를 실은 신輦(神輦)이 태묘로 나아갔고, 오후 6시 30분에 명성태황후의 신주 또한 태묘로 나아갔다.<sup>73)</sup> 다음날인 3월 31일 오전 영시(零時) 30분에 고종과 명성황후를 태묘 제18실에 부묘하고, 오전 1시 30분에 부묘대제(祔廟大祭)를 친행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6시에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의 신주를 영녕전 제15실로 조천한 뒤 안신제(安神祭)를 지냈다.<sup>74)</sup>

68)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2월 12일(丁卯): 『高宗實錄』 권37, 고종 35년 1월 4일(陽曆).

69) 『讀禮通考』 卷105, 變禮5 「葬不以時」, “通典晉杜元凱云(중략) 既祔 明一月 練而祭 又明一月 大祥而祭”

70)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1월 21일(乙巳): 『高宗實錄』 권37, 고종 35년 2월 11일(陽曆).

71)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1월 26일(庚戌).

72)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3월 22일(乙巳): 『高宗實錄』 권37, 고종 35년 4월 12일(陽曆).

73)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藏 K2-2218) 卷上, 時日: 『純宗實錄』(附錄) 권12, 순종 14년 3월 30일(陽曆).

74)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藏 K2-2218) 卷上, 時日: 『純宗實錄』(附錄) 권12, 순종 14년 3월 31일(陽曆).

고종과 명성왕후의 부모 및 장조의 영녕전 조천 이후, 종묘와 영녕전의 신위 봉안 상황은 아래 <표 1>·<표 2>와 같다.

<표 1> 종묘에 봉안된 신위 (19실 비어 있음)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1실	12실	13실	14실	15실	16실	17실	18실	19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태조	불천지주(不遷之主)											1세	1세	1세	1세	1세	1세	

<표 2> 영녕전에 봉안된 신위 (동협실 16실 비어 있음. 점선은 형제관계)

서협실					정 전					동협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실	2실	3실	4실	11실	12실	13실	14실	15실	16실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인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명종	원종	경종	진종	장조	

길고 길었던 명성왕후 국장과 명성왕후 국장이 이로써 끝났다. 시해, 공식적인 죽음 발표, 아관파천, 황제 즉위와 황후 책봉 등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장이 지연을 거듭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변례의 끊임없는 발생, 그리고 변례가 또 다른 변례를 낳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국장이었다. 아울러 제후국 왕후로서의 국장과 천자국 황후로서의 국장을 모두 겪었으며, 특히 황후로서의 국장은 처음 치렀으나 왕후 국장에서 큰 변화를 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 3. 명성왕후/황후 국장의 변화와 특징

#### 1) 의식 절차

명성왕후/황후의 국장이 '왕후' 국장이었다면 조선시대 여타 왕후들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황후 국장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국조상례보편』(1758)을 따라 진행되었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에서 ‘보편’ 혹은 ‘상례보편’을 참고한 기록이 곳곳에서 보이며, 특히 대행왕후 국홀 때 제반 의절은 『상례보편』을 따라 거행하되 전례 중 이전과 다른 것이 있으면 역대에 이미 시행했던 예(例)를 참작하여 마련하라고 세 도감에 지시한 것에서 명확해진다.<sup>75)</sup>

다만, 실제로 그와 같이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시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2장에서 보았듯이 여느 왕후 국장에서 보기 힘든 상당히 파격적인 상장 절차를 보였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왕후 국장으로 치르던 중 황후 국장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시대 국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의절을 시행했고, 그 밖에 의물, 용어 등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실 명성왕후/황후 국장의 특징이라고 할 때 그 자체로 발산하는 면도 없지 않다. 시해라는 방식의 죽음,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국장, 왕후 국장에서 황후 국장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국장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시대 왕후 국장 중 ‘내상재선’에 해당하는 국장과 비교한다면 좀 더 도드라질 것이지만 지면의 한계상 향후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여기서 명성왕후/황후 국장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 부면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조선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그 사회는 모든 질서를 ‘예(禮)’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짓는 유교 사회였다. 신분적 위계가 뚜렷하여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의례 절차, 의물, 건물 등 곳곳에서 그 위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내재해 있었다.

다만, 의절을 거행할 때 동원되는 사람 수, 소용되는 물품의 수와 형태·규모, 참여자의 신분 등 여러 측면에서 왕후 국장과 황후 국장은 그 차이를 노정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제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의식 절차, 용어, 도설 등 세 부분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75)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1, 都廳儀軌 掌禮院來通 「丁酉四月初七日」.

본 절에서 살펴 볼 의식 절차는 왕후 국장에서 황후 국장으로 변화를 거친 가운데 황후 국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의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 확인한 결과 황후 국장으로 바뀌면서 주목되는 의절은 구우제와 부알례였다. 그리고 연제와 상제를 지낼 때 참고한 <장불이시조>이다.

먼저 우제이다. 우제는 우제를 지내는 횟수와 그 시점이 주목되는 의절이다. 우제의 ‘우(虞)’는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장례를 치른 뒤 우제를 거행하여 그 혼(魂)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다.<sup>76)</sup> 『예기』에 ‘초우제는 무덤에서 장례지낸 날에 지내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중에 지낸다.’고 규정되어 있다.<sup>77)</sup> 또 사(士)는 삼우(三虞), 대부는 오우(五虞), 제후는 칠우(七虞)까지 지낸다고 『예기』에 규정되어 있다.<sup>78)</sup>

한편, 『국조상례보편』에 기재된 우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왕은 칠우를, 소상(小喪)은 오우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sup>79)</sup> 그리고 ‘초우(初虞)는 장례지낸 날에 거행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중에 지낸다. 혹 길이 멀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하룻밤 이상을 밖에서 자야 할 형편이라면 행궁(行宮)에서 행한다. 국왕은 제이우(第二虞)부터 제육우(第六虞)까지, 소상은 제이우부터 제사우(第四虞)까지 유일(柔日)에 행했다. 국왕은 제칠우(第七虞), 소상은 제오우(第五虞)를 강일(剛日)에 거행한다.’라고 되어 있다.<sup>80)</sup>

먼저 조선의 국왕은 제후에 해당하므로 ‘칠우’를 해야 하고, 왕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논리라면 천자국의 황제나 황후라면 구우(九虞)를 해야 한다.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의 선포로 황후로 책봉된 뒤에 우제를 지냈기에 구우제를 지냈고, 따라서 이 규정은 무리없이 잘 준수했다. 또 초우제도 장례지낸 날에 거행하여 하루를 넘기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초우부터 구우까지 유일과 강일의 준수 여부이다. 십간의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에

76) 『禮記集說大全』 卷4, 檀弓下4(元 陳澧 註. 이하 같음); 『春官通考』(下) 卷80, 凶禮 虞祭(附祝式祝板).

77) 『禮記集說大全』 卷4, 檀弓下4.

78) 『禮記集說大全』 卷20, 雜記下21.

79)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2, 「卒哭祭」.

80) 『國朝喪禮補編』(奎 3940) 卷2, 「虞祭」.

해당하는 날이 유일이고,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에 해당하는 날이 강일이다.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처럼 따른다면 재우부터 팔우(八虞)까지는 유일, 구우는 강일에 지내야 한다. 재우제(음력 10월 29일 을유, 유일), 삼우제(음력 11월 1일 병술, 강일), 사우제(음력 11월 3일 무자, 강일), 오우제(음력 11월 5일 경인, 강일), 육우제(음력 11월 7일 임진, 강일), 칠우제(음력 11월 9일 갑오, 강일), 팔우제(음력 11월 11일 병신, 강일), 구우제(음력 11월 13일 무술, 강일)에서 재우제와 구우제를 제외하고 국가전례서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유일, 강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은 명성황후의 국장에서 줄곡 다음에 행한 부알례와 부향(祔享)이다. 그보다 앞서 이 의례가 황후 국장의 위상에 걸맞은가에 대한 확인 작업부터 필요하다. 조선에서는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흉례를 정비했다. 물론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하되 이 책이 왕례(王禮)가 아닌 ‘사례(士禮)’ 중심의 예서이기 때문에 제후에 해당하는 조선의 국왕에게 맞지 않는 절차들이 있어서 제후국 국장에 걸맞게 수정했다. 가령, 3개월이 아닌 5개월만에 장례를 치른다거나 우제를 삼우제, 오우제가 아닌 칠우제까지 지낸 점, 줄곡 다음에 부모를 고하는 절차[부제, 부알례]를 없애고 대상 다음에 부모례를 거행하도록 한 것이었다.<sup>81)</sup> 이러한 사항들이 국가전례서에 반영되어 조선시대 국장에서는 이와 같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국장에서는 제후국 의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알례와 부향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명성황후의 국장에서 이를 거행한 것이었다. 명성황후 국장에서 줄곡 다음 날에 행한 부알례는 사당으로 신주를 모시고 가서 조상에게 인사를 시킨 뒤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부제까지 이어졌다. 부알례를 행한 뒤 제14실의 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 신위 왼쪽편에 서쪽을 향하도록 모시고 부향을 거행한 것이었다.<sup>82)</sup> 물론 부향을 지낸 뒤

81) 조선 초 국장에서 흉례 절차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진, 2017 앞의 책, 제1장 제1절 참조.

82) 이육, 2018 앞의 논문, 59면.



에 신주는 다시 혼전인 경효전에 봉안되었다.

그렇다면 왜 명성황후의 신주를 순원왕후에 곁에 모신 뒤 부향을 지낸 것인가. 『예기』에 부향은 소목(昭穆)을 따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83)</sup> 곧, 아버지의 국상이라면 아버지의 신주를 증조 할아버지에게 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84)</sup> 그리고 『예기』의 이 규정은 왕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명성황후는 그에게 할머니가 되는 왕후에게 부(祔)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순원왕후였다. 이때 자신이 증전인지, 후궁인지에 따라 부해야 할 대상도 달라지지만 명성황후는 증전이었으므로 순원왕후에게 부하면 되었다.

고종은 익종비 신정왕후(神貞王后)에 의해 철종의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했다. 왕위 계승의 원칙에 따라 철종과는 부자의 의리가 성립되었으나 또 다시 익종의 후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 대통을 이은 의리상의 부모와 낳아준 본생 부모, 후사로 들어간 부모가 모두 달라진 것이었다. 대통을 이은 의리상의 부모는 철종 부처, 낳아준 본생 부모는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 閔氏), 후사로 들어간 부모는 익종과 신정왕후였다.<sup>85)</sup>

후사로 들어간 부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조부모는 순조와 순원왕후가 해당된다. 혈연적으로 순조(조)-익종(부)-고종(자)가 되는 셈이다. 고종이 국상에서 졸곡 다음 날에 부알례와 부향을 행한다면 그 대상은 순조가 되고, 명성황후는 순원왕후였다.

그렇다면 명성황후 국상에서는 어떤 문헌을 근거로 치렀느냐 하는 점이 의문이다. 사실 졸곡 다음에 행하는 부알례는 천자나 제후도 아닌 ‘대부사(大夫士)’가 행하는 의례이다. 당장 『주자가례』에 졸곡 다음 날에 부제를 지낸다는 절차에서 입증된다.<sup>86)</sup> 뿐만 아니라 <장불이시조> 또한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에 나오는 편명이다.<sup>87)</sup>

83) 『禮記集說大全』 卷15, 喪服小記15.

84) 『司馬氏書儀』 卷8, 喪儀4 『祔』.

85) 이현진, 2009 『19세기 조선 왕실의 왕위 계승과 종묘 세실론』 『韓國思想史學』 32, 389면. 고종의 즉위 과정 및 그의 정체성 전반에 대해서는 이현진, 2009 위 논문, 4장 참조.

86) 『家禮』(奎中 311) 卷6, 喪禮3 『祔』.

87)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 『독례통고』 그 자체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저서는 없는

중국은 당나라 이후 명나라에서 『대명집례(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황실의 국장 과정이 전하지 않는다.<sup>88)</sup> 그런 가운데 『독례통고』의 국훈(國恤)은 상장 절차가 아닌 각 왕대별 고사를 수록한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책에 수록한 상장 절차는 『주자가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sup>89)</sup> 특히 명성·황후의 국장은 처음 시행하므로 ‘역대 전례(典禮)’를 참고했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그 참고한 문헌 중 출처가 분명한 책이 『독례통고』였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례는 연제와 상제, 담제를 지내는 시기이다. 조선에서 ‘내상제선’에 해당하는 왕후는 승하한 지 11개월 만에 연제, 13개월 만에 상제,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달씩 건너뛰어서 행례했음을 볼 수 있는데, 명성황후의 국장에서는 연제는 1898년 1월 4일(음력 1897년 12월 12일), 상제는 1898년 2월 11일(음력 1월 21일), 담제는 1898년 4월 12일(음력 3월 22일)에 지내어 이 또한 차이를 노정했다. 『독례통고』의 <장불이시조>를 따름으로써 생긴 차이였다.

이를 통해, 줄곧 다음 날에 행한 부알례와 부향, <장불이시조>의 내용으로 지낸 연제와 상제 등 분명 명성·황후의 국장임에도 정작 시행한 의식 절차가 황실 국장의 위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의절만을 본다면 명성황후의 국장에서 천자국의 위상에 맞게 진행된 의절은 구우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해 사건, 폐서인, 빈으로 승격, 왕후 위호 회복 등 일반적인 왕후의 죽음과 달랐기에 모든 절차들이 제때에 맞춰 거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의절에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등 국가적으로

듯하다. 다만, 이 책을 소재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박종천, 2010 「朝鮮 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韓國實學研究』 20.

박종천, 2011 「茶山 丁若鏞의 『讀禮通考』 研究 初探」 『韓國實學研究』 21.

장동우, 2015 「茶山 『喪儀節要』의 淵源과 再成文化의 原則」 『韓國實學研究』 30, 2절.

전성진, 2016 「19세기 삼례서연구의 다양성과 고증학의 영향: 정약용, 심대윤, 이진상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62, 102면.

88) 중국 황실의 국장에 대해서는 이현진, 2011 「조선시대 종묘의 부모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2장 2절 1항 참조.

89) 『讀禮通考』 卷38~51, 喪儀節1~14.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건의 발생은 명성왕후/황후 국장을 더욱 예전과 다르게 처리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2) 용어

사실 용어와 다음 절에서 설명할 도설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왕후 국장에서 드러난 의물의 명칭과 규모가 황후 국장이 되면서 둘 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문헌에서 그림이 있는 것은 도설 편에서 다루고자 한다.

중국의 번방으로서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은 건국 초 국가 예제를 정비하면서 천자국 중국보다 한 등급 낮추는 방향으로 모든 예제를 규정지었다. 국가만이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법전과 국가전례서에 성문화되었고, 이는 특히 상장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죽었다’는 표현부터 지위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 『예기(禮記)』 『곡례(曲禮)』 편에 ‘천자는 붕(崩), 제후는 홍(薨), 대부는 졸(卒), 사(士)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라고 한 기록이 그것이다.<sup>90)</sup> 조선의 국왕은 제후에 해당하므로 그의 죽음을 ‘홍’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고, 자료에는 대개 ‘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승하(昇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간혹 ‘홍서(薨逝)’를 쓰기도 했다. 홍서는 그 밖에 세자나 세자빈의 죽음에 사용되기도 했다.

명성왕후는 고종 32년 8월 20일(음력) 세상을 떠난 그 날짜에 『고종실록』에는 붕서로,<sup>91)</sup> 그 이후에는 붕서와 승하 둘 다 기재되어 있다.<sup>92)</sup> 『승정원일기』에는 죽은 그날에는 죽음에 대해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고종 32년 10월 15일(음력)자에는 붕서와 승하 둘 다 기록되어 있다.<sup>93)</sup> 또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10월 12일(음력)자에는 붕서라고 표기되어 있다.<sup>94)</sup>

90) 『禮記集說大全』 卷2, 曲禮下2(元 陳澧 註. 이하 같음).

91)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8월 戊子(20).

92) 고종 32년 10월 15일(음력)자 『고종실록』에 ‘붕서’와 ‘승하’ 둘 다 기록되어 있다[『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10월 壬午(15)]. 고종 33년 2월 11일(양력)자 『고종실록』에는 ‘붕서’라고 되어 있다[『高宗實錄』 권34, 고종 33년 2월 11일(陽曆)].

93)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0월 15일(壬午).

94)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10월 12일(戊辰)(陽曆 11月 6日).

그 밖에 『명성황후국휼등록(明成皇后國恤謄錄)』에는 을미년(1895) 8월 20일자에는 ‘승하’, 이해 10월 15일자에는 붕서와 승하 둘 다 기록되어 있다.<sup>95)</sup> 『경효전일기』에도 을미 8월 20일자에는 ‘승하’, 이해 10월 15일자에는 붕서와 승하 둘 다 기재되어 있다.<sup>96)</sup> 단,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와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에는 ‘붕(崩)’으로 표기되어 있다.<sup>97)</sup>

참고로 1897년(고종 34) 1월 18일(음력 1896년 12월 16일) 일본 황태후의 죽음을 ‘붕서’라고 한 기록이 있다.<sup>98)</sup> 그렇다면 ‘붕서’라는 단어는 왕후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황후의 죽음에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붕서, 승하, 붕 등 명성왕후/황후의 죽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승하는 조선 시대 국왕이나 왕후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이지만 붕서와 함께 기록한 것은 국장 기간이 왕후 국장과 황후 국장이 공존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붕’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명성왕후보다는 명성황후에 가깝게 그의 죽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위 여러 문헌들의 편찬 시점이다. 명성왕후가 죽은 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편찬되었거나 황후로 책봉된 이후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붕서와 승하, 붕 등을 혼용해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궤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라는 서명에 ‘명성황후’라고 한 기록에서 분명해진다. 사실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에는 표지에는 ‘명성황후’ 4글자가 있으나 내제에는 없다. 하지만 ‘권수(卷首)’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명성 ‘황후’가 붕했다는 것에서 맥락이 다르지 않다. 또 세 책이 적어도 1897년 음력 10월 28일(양력 11월 22일) 이후에 의궤의 편찬에 들어간 시점을 보더라도 황후

95) 『明成皇后國恤謄錄』(藏 K2-2933) “開國五百四年乙未八月二十日 國恤謄錄【(註) 大清光緒二十一年 國恤頒布則十月十五日】 中宮殿昇遐于景福宮內乾清宮坤寧閣”; 『明成皇后國恤謄錄』(藏 K2-2933) 乙未十月十五日.

96) 『景孝殿日記』(藏 K2-2418) “乙未八月二十日戊子 晴吹西風 卯時 王后昇遐于景福宮坤寧閣玉壺樓”; 『景孝殿日記』(藏 K2-2418) 十月十五日壬午.

97)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1, 都廳儀軌 卷首;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卷首];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98) 『高宗實錄』 권35, 고종 34년 1월 18일(陽曆);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2월 16일(丙子).

로 책봉된 이후였다.<sup>99)</sup> 대개 흉례 관련 의례는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세 도감이 혁파되면 비로소 의례의 편찬에 들어가는데,<sup>100)</sup> 명성황후의 흉례 의례의 편찬 과정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 밖에 국왕과 왕후의 장례를 ‘나라의 장례’라는 뜻으로 ‘국장(國葬)’, 세자나 세자빈은 한 등급 낮추어 ‘예장(禮葬)’, 국왕의 상을 ‘대상(大喪)’, 왕후의 상을 ‘내상(內喪)’, 세자의 상을 ‘소상(小喪)’, 세자빈의 상을 ‘소내상(小內喪)’이라 하여 구별지었다.<sup>101)</sup> 또 국장과 예장의 구별은 시신을 봉안한 빈전/빈궁(殯宮), 신주를 봉안한 혼전/혼궁(魂宮), 시신을 넣는 재궁/재실(梓室), 재궁/재실을 보호하는 바깥의 더 큰 외재궁(外梓宮)/외재실(外梓室), 재궁/재실을 모셔두는 찬궁/찬실(欝室), 산릉에서 재궁/재실을 안장하는 큰 구덩이인 현궁(玄宮)/현실(玄室) 등 여러 부면에서 용어가 명확하게 대별되었다.<sup>102)</sup>

먼저 명성‘왕후’의 국장에서는 이처럼 조선의 국장에서 사용해 왔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황후 국장에서는 어떠한가. 신분에 따라 달리 지칭할 만한 이러한 용어들에서 변화가 없었다. 조선의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황후’ 국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왕후 국장에서 쓰던 용어가 황후 국장으로 바뀌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대행‘왕후’는 대행‘황후’로, 명성‘왕후’는 명성‘황후’로 바뀐 칭호에서 찾아진다. 또 옥책 대신 금책, 길유궁 대신 황당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이외에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용어 보다는 도설 편이 기대된다.

99)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1, 都廳儀軌 儀軌(附) 『丁酉十月二十八日』; 『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890) 卷1, 儀軌事例 『光武元年丁酉十一月初五日』;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附儀軌 『丁酉十一月初七日』, 참고로 의례에는 날짜가 모두 음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100)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등의 편찬에 대해서는 이현진, 2015 앞의 책, 제1부 제5장 참조. 여기서는 ‘정조’의 국장 관련 의례를 예로 들었으나 흉례 관련 의례의 편찬 시기는 거의 다르지 않다.

101) 이현진, 2017 앞의 책, 18면.

102) 국장부터 현실까지 용어 설명은 이현진, 2017 앞의 책, 20-21면 참조.

## 3) 도설

국장과 관련된 도설은 대부분 국가전례서 및 의궤에서 볼 수 있다. 명성'왕후' 국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도설이나 조선시대 왕후의 국장 의궤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의궤의 편찬에 들어가는 시점이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세 도감이 혁파되면서부터였고, 완료 시점은 그보다 뒤였다. 그런 까닭에 명성'왕후'의 국장이 진행되는 동안 조성된 의물이나 기타 구조물은 알기가 쉽지 않다.

다만, 황후로 책봉되었으나 그 이전에 조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황후로 책봉된 뒤 석의를 다시 제작하지 않고, 승릉 우강에 산릉을 조성할 당시의 석의 등을 그대로 옮겨다 쓴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의 도설에도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산릉도감의궤』에서 볼 수 있는 석의의 모습이였다.



〈그림 1〉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에 그려진 홍릉 석의<sup>103)</sup>

그 밖에 찬궁과 그 안에 그림을 그려 붙인 사수도(四獸圖)이다. 찬궁과 사수도 역시 조선시대 국장에서 볼 수 있는 도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03)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大浮石所儀軌 圖說 「長明燈」·「望柱石」·「文石人」·「武石人」·「虎石」·「羊石」·「馬石」.



〈그림 2〉 사수도와 찬궁<sup>104)</sup>

왕후에서 황후로 신분이 달라지면 어떤 행사를 거행할 때 의장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의궤의 편찬 시점을 고려한다면 의궤 속에 그려진 도설은 명성·황후의 신분에 맞게 그려져야 한다. 대부분 의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뀌면서 형태나 규모, 색도 함께 바뀌기 마련이다. 문제는 황후의 신분에 맞게 그려진 도설도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렇지 않은 도설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황후의 위상에 맞는 의물이나 건물을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본 절에서 서는 지면의 한계상 모두 다 다룰 수는 없다.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 그려진 도설과 명성황후 홍례 의궤에 실린 도설을 일일이 비교해서 수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물과 건물 두 분야로 나누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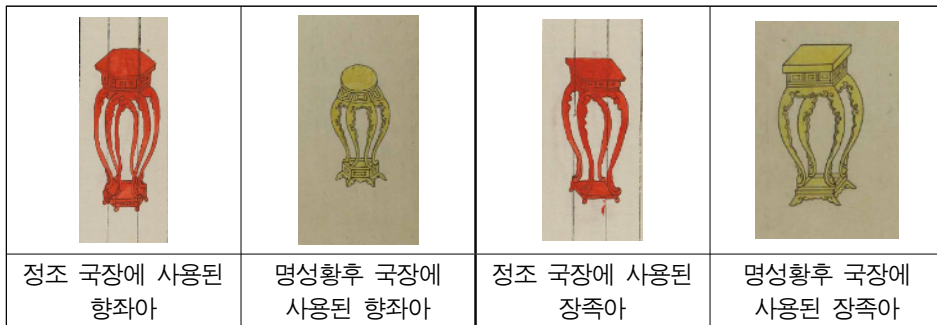
먼저 의물이다. 영좌교의(靈座交椅), 향좌아(香佐兒), 장족아(長足兒)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영좌교의는 영좌 안에 설치하여 죽은 자의 혼령이 깃든 신백을 담은 신백함(神帛函)을 올려두는 작은 의자이다. 왼쪽은 정조 국장에서 사용한 영좌교의이고, 오른쪽은 명성황후 국장에 사용한 것이다.

104)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造成所儀軌 圖說 「四獸圖」·「欝宮圖」.



〈그림 3〉 정조 국장과 명성황후 국장에 사용된 영좌교의<sup>105)</sup>

다음은 향좌아와 장족아이다. 향좌아는 향로(香爐)나 향합(香盆)을 올려놓는 데 사용된 탁자이다. 장족아는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데 사용된 탁자로, 옷칠과 사용처는 향좌아와 동일하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4〉 정조 국장과 명성황후 국장에 사용된 향좌아와 장족아<sup>106)</sup>

정조 국장에 사용된 영좌교의와 향좌아, 장족아는 명성황후 국장에 사용된 것과는 모양도 조금 다르지만 색은 명백하게 구별된다. 정조 국장에 사용된 이들은 왜주칠(倭朱漆)을 한 반면, 명성황후 국장에 사용된 이들에게는 석자황칠(石紫黃漆)을 했다. 붉은 색은 제후국의 의물이나 물건에, 황색은 천자국의 그것에 사

105) 『正祖國葬都監儀軌』(奎 13634) 一房儀軌 造作秩 「靈座交倚」;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2, 一房儀軌 圖說 「靈座交椅」.

106) 『正祖國葬都監儀軌』(奎 13634) 一房儀軌 造作秩 「香佐兒」·「長足兒」;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 13883) 卷2, 一房儀軌 圖說 「香佐兒」·「長足兒」.



용하기 때문이다. 의물을 싸는 보자기를 예로 들면, 중종대에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황보(黃袱)로 봉과(封裹)하여 진상하는 것이 참람한 예에 가깝다고 한 장계(狀啓)로 인해 중종이 8도에 황보 대신에 홍보(紅袱)를 사용하도록 전교한 기록에서 볼 수 있다.<sup>107)</sup>

다음은 건물이다. 건물로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왕릉에 조성한 정자각(丁字閣)과 침전(寢殿)이다. 정자각은 능에서 제향을 올리는 ‘정(丁)’자 형태의 건물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1474, 성종 5)에는 능실(陵室)의 남쪽에 있되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는 3칸 짜리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sup>108)</sup> 또 이 책에는 ‘침전은 곧 정자각이다.’라고 규정하여, 두 용어가 다르지 않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침전’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 ‘정자각’이라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일컬었다.

그러다가 1897년 3월 27일(양력) 충호사 조병세가 전에는 정자각의 규모가 정전(正殿)과 배위청(拜位廳)을 합해서 8칸 혹은 5칸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가를 물었고, 그에 대한 고종의 답변으로 인해 정자각의 칭호에 변화가 생겼다. 고종은 정자각은 『오례의』대로 침전이라고 일컬고, 제도는 5칸으로 정하되 배위청은 전내(殿內)에 두어서 마련하라는 제칙을 내렸다.<sup>109)</sup>



〈그림 5〉 정조의 건릉(健陵)에 건립한 정자각과 명성황후의 홍릉에 건립한 침전<sup>110)</sup>

107) 이현진, 2018 『조선 왕실의 포장(包裝) 문화』 『문헌과해석』 82, 86면.

108)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壇廟圖說 『山陵』.

109)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2월 25일(甲申): 『高宗實錄』 권35, 고종 34년 3월 27일(陽曆):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上編, 時日.

고종이 제칙을 내린 때는 아직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이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일반인이든 정자각은 제후국에, 침전은 천자국에 건립하는 왕릉의 제향 장소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정자각과 침전이 조선 초기부터 동일한 건물을 다르게 칭한 것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이 즈음 대한제국의 선포와 더불어 천자국으로 국체가 승격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건물의 규모와 용어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고종은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 왕세자는 왕태자로 일컬어졌다.<sup>111)</sup> 이는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屬國)에서 벗어나면서 가능했다.<sup>112)</sup> 그 뒤 개국기년(開國紀年), 건양이라는 연호의 사용을 통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천자국 제도를 쓰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정자각이 찾아지지 않고 모두 침전이라고 하여, 고종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음은 황당이다. 황당은 옹가(甕家) 안 남쪽에 서향으로 설치되었다.<sup>113)</sup>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에는 황궁이 아닌 '길유궁(吉帷宮)'이라고 기록한 곳도 있기에,<sup>114)</sup> 조선시대 국장에서의 길유궁 혹은 유궁(帷宮)이 제주소(題主所)로서 황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곳이었음을 알려준다. 단, 차이는 그것을 설치하는 위치인데, 길유궁은 옹가 안이 아닌 정자각의 서쪽이었다.<sup>115)</sup>

11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奎 13640) 造成所儀軌 圖說 「丁字閣圖」;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造成所儀軌 圖說 「寢殿圖」.

111)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2월 17일(己未); 『高宗實錄』 권32, 고종 31년 12월 己未(17).

112) 劉바다, 2017 「1894년 淸日戰爭의 발발과 조선의 屬國 지위 청산」 『大東文化研究』 98, 3장.

113)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造成所儀軌 圖說 「皇堂圖」, “皇堂設於甕家內之南西向”

114)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別工作儀軌 燒火秩.

115) 이현진, 2015 앞의 책, 215면 각주 121) 및 232면 각주 21) 참조. 각주 121)은 351면에 있고, 각주 21)은 353면에 있음.



〈그림 6〉 정조의 건릉에 설치한 길유궁과 명성황후의 홍릉에 설치한 황당<sup>116)</sup>

의절에서부터 용어, 도설까지 왕후 국장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고려가 국내적으로 황제국을 일컬었지만 흥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록이 없고, 그 이후에는 조선이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자처하여 황제국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참고할 만한 전례(前例)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황제국을 선포한 직후 명성황후의 국장을 재개함으로써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시책, 시보 등 다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전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왕후의 국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조선의 『국조상례보편』을 여전히 참고할 뿐 아니라, ‘역대 전례(典禮)’를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황후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례 정비나 의물의 조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4. 맺음말

고종비 명성왕후/황후는 1895년 일본인들에게 시해를 당하여 일반적인 왕후의 죽음과 달랐다. 그로 인해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흥례 규정을 따른 왕후의 국장

116)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奎 13640) 下編, 造成所儀軌 圖說 「吉帷宮圖」;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奎 13891) 下編, 造成所儀軌 圖說 「皇堂」.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 뒤에도 고종의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등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장이 지연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끊임없는 변례의 발생, 그리고 왕후 국장에서 황후 국장으로 바뀌기까지 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국장을 치렀다.

명성왕후/황후 국장은 제후국 왕후로서의 국장과 천자국 황후로서의 국장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왕후 국장에서 큰 변화를 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구우제를 제외한 부알례와 연제, 상제에서 부알례는 황후 국장도 왕후 국장도 아닌 대부사의 상례에서 볼 수 있는 절차이며, 연제와 상제에서 근거로 삼은 문헌 또한 대부사의 상례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의절만이 아니라 용어, 도설에서도 상당 부분 조선의 왕후 국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붕’자의 사용, 대행왕후가 아닌 대행 ‘황후’ 등의 용어에서, 주칠이 아닌 황칠을 한 의물, 정자각과 침전이라는 용어와 도설 등등에서 왕후가 아닌 황후 국장임을 명백하여 보여주는 것 이외에 왕후 국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음이 확인된다.

본고는 『고종실록』을 중심으로 『승정원일기』, 의궤, 등록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자료의 편찬 시점을 고려한다면 『승정원일기』나 의궤, 등록 등의 자료가 『고종실록』보다 당시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필자가 명성왕후/황후 국장에서 전체 전개를 위해 『고종실록』을 다른 자료에 비해 중심에 두었던 것은 다른 자료, 특히 관찬 자료인 『승정원일기』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고종실록』에 더 잘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성왕후/황후 국장은 조선시대 여느 국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에 치러졌다. 국운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왕후가 시해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고,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장을 진행해야 했다. 따라서 국내외 정국 동향, 주요 정치적 사건, 국장 절차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성왕후/황후의 국장에서는 『고종실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sup>117)</sup> 이 시기 『고종실록』과 『승정원

117) 현재 『고종실록』을 주요 소재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입장이

일기』에 대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고종의 국장과 관련해서 『순종실록』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종 국상 관련 의례를 참조했다. 현재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고종의 국상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파악하려면 『순종실록』과 의례를 비롯하여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 건너편에 있는 국립 공문서관에 있는 ‘고 이태왕 국장 서류’를 참고할 때 좀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sup>118)</sup> 고종 국장 전반에 대한 파악은 후일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明成皇后, 國葬, 俄館播遷, 大韓帝國, 變禮, 九虞, 祈謁禮, 練祭, 祥祭

투고일(2019. 2. 7), 심사시작일(2019. 2. 12), 심사완료일(2019. 3. 5)

다른 두 연구가 있다. 하나는 ‘『고종실록』·『순종실록』이 일본인의 주도로 왜곡된 인식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식민사관이 투영된 결과물’로 보는 연구이다(장영숙, 2014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사학연구』 116). 다른 하나는 『고종실록』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일본 궁내청 소장 ‘공족실록’을 통해 ‘일본인의 시각에서 정리된 편찬물이지만 기록의 조작이나 왜곡, 가필 등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의 연구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이다(정옥재, 2016 『日本 宮内廳 所藏 ‘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 『李熹公實錄』·『李熹公實錄資料』·『李焞公實錄』·『李焞公實錄資料』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64).

118) 아마가와 에미코·기무라 요이치로(조양욱 옮김), 2012 『조선왕실의례의 비밀』, 기파랑, 75-76면.

〈Abstract〉

## Nature of the Funeral Proceedings for King Gojong's Wife Empress Myeongseong

Lee, Hyun-jin \*

Emperor Gojong's wife, Empress Myeongseong, was assassinated by the Japanese in 1895, so her demise was an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Joseon queens. It was simply not possible to observe for her the usual funeral procedures [Hyung'rye(凶禮)] as dictated in the Joseon dynastic codes. The funeral for her was inevitably put on hold as King Gojong was forced to seek refuge in the Russian Embassy [Agwan Pacheon(俄館播遷)], and it was even more delayed with Gojong's declaration of the Daehan Empire's foundation. And as if that was not enough, codes had to be modified[Byeon'rye(變禮)] for her eventual funeral, and preparations became more complicated when the funeral had to be designed to honor her as an Empress and not a mere Queen.

The most distinctive aspect of the funeral for Empress Myeongseong was that it featured elements of both a funeral for a wife of a regional lord, and a funeral for a wife of an Emperor.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maintained the basic parameters of an ordinary funeral for a Queen. During the "Wuje" stage, held was a "Gu'wu-je(九虞祭)" service which had usually been part of a funeral for an Empress, but other ceremonies that accompanied it, such as the Bu'al-rye(祔謁禮), Yeonje(練祭) and Sangje(祥祭) ceremonies, were not. Bu'al-rye was usually observed in funerals for ordinary Sa/Daebu [大夫士], and references consulted for the Yeonje and Sangje ceremonies were from books about Sa/Daebu funerals.

**Key Words** : Empress Myeongseong, Dynastic Funeral, King's Refuge in the Russian Embassy, Daehan Empire, Modified protocols, Gu'wu(九虞), Bu'al-rye service(a ritual of paying respect to past kings and queens before newly enshrining the tablet of a recently deceased royal figure in the dynastic shrine), Yeonje service, Sangje service

---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